

개정 전	개정 후
	<p>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  <u>터 3년(2019년 1월 1일부터 2020</u>  <u>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</u>  <u>취득한 경우에는 4년)이 경과할</u>  <u>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</u>  <u>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 <u>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(해</u>  <u>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</u>  <u>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</u>  <u>경우는 제외한다) · 증여하거나</u>  <u>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⑧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 <u>특례법」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</u>  <u>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</u>  <u>득세,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</u>  <u>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</u>  <u>지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</u>  <u>터 제4항까지, 제28조제2항 · 제3</u>  <u>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</u>  <u>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